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쪽 당사국이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운영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관세법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하여 탁송 업무를 운영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을 통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제4.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서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4.3조

적용범위

이 장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제4.4조

일관성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한다.
-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그 당사국의 지역 세관 간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이 장의 협의 절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할 수 있다.
-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행정 메커니즘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행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자국의 관행과 경험을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4.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 가.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 절차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 나. 수입이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 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 라. 통관 목적상 생산품의 품목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규칙
-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규정
- 바. 수입, 수출이나 통과 제한 또는 금지
-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 자.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모든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 차. 관세 할당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언어 외의 언어로 정보를 공표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특히,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간신한다.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자국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에 관한 설명¹

나.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를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그리고

다. 제4.6조에 규정된 대로 문의처의 연락정보뿐만 아니라 관세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4. 가능한 한도에서, 새로운 관세법 및 규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제안된 법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사전 공고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이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발효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4.6조

문의처

¹ 각 당사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문의에 답변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한다.

제4.7조 통관 절차

-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한다.
-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자국의 통관 절차를 검토한다.

제4.8조 선적전검사

-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선적전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그 이용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 제2항은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적전검사를 지칭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상 선적 전 검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4.9조 도착 전 처리

- 각 당사국은 도착 즉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처리를 시작하도록 상품의 수입에 요구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및 그 밖의 정보를 그러한 서류의 도착 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사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제4.10조 사전심사결정

- 각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 품목분류
 - 이 협정상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
 -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절차
 - 각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상품의 견본을 포

함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언제 라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그리고

라. 사전심사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발급 당사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언어로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한다. 사전심사결정은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접수 시 90일 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신청 전에 사전심사결정 발급 기간을 명시하고 공개한다. 관세 당국은 신청의 접수 후 명시된 기간보다 늦게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한 지연의 근거를 통보한다.

4.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상황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5. 당사국은 제2항나호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된 추가 정보가 합리적이고 명시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추가 정보의 요청 당시 결정되고 그 당사국은 추가 정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6.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및 행정규칙, 그리고 사실 및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 및 제7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은 최소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7. 다음의 경우에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가. 자국의 법, 규정 및 행정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 다.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 라.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8.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사전심사결정이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했던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9.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은 그것을 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0.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 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양식을 포함한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 나.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기간, 그리고
 - 다.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한 기간
11. 각 당사국은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이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1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

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 항은 반출을 위한 당사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에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나.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3. 상품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경우, 그러한 검사는 합리성과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수행되며, 과도한 지체 없이 행해지고 완료된다.

4. 각 당사국은 도착 전,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정 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당사국은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보증을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5. 이러한 규정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나 몰수, 또는 처리하는 그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세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시간 내,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관세 당국의 업무 시간 외

7. 각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8.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이 승인 또는 지정하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4.12조 정보기술의 적용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기초하여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관리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된 상품 도착 전 자료의 제출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를 대중이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5. 종이 없는 무역행정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 개발 시,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또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6.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력한다.

제4.13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1. 각 당사국은 제5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이하 "공인업체"라 하는 업체에 제공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국은 그러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관 절차를 통하여 모든 업체에 제공할 수 있고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 공인업체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명시된 기준은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요건의 준수, 또는 미준수의 위험과 관련된다.

3. 공표되는 그러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에 관한 적절한 기록

나. 필요한 내부 통제를 허용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다. 적절한 경우, 충분한 담보나 보증의 제공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라. 공급망 안전성

4. 그러한 기준은

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업체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유발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 가능한 한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의 조치 중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²

가. 적절한 경우, 낮은 수준의 서류 및 자료 요건

나. 적절한 경우, 낮은 비율의 물리적 검사와 조사

다.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 시간

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연기

마. 광범위한 보증 또는 감액된 보증의 사용

바. 주어진 기간 내 모든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신고, 그리고

사. 공인업체의 사업장이나 관세 당국이 인증한 다른 장소에서의 상품의 통관

6.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표준에 기초하여 공인업체 제도를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7. 한쪽 당사국은 업체에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인업체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8.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각국의 공인업체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제4.21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다음을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²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열거된 조치는 모든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들에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가. 그러한 제도 및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 교환
- 나. 비즈니스 관점 및 경험에 관한 시각,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활동에서의 우수 관행 공유
- 다. 그러한 제도의 상호 인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 그리고
- 라. 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증대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그리고 우선, 관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업체에 대한 조정자로서 세관 공무원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제4.14조

위험관리

- 1. 각 당사국은 세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 3. 각 당사국은 세관 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택송 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택송물의 반출을 신속화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택송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 4.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도록 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의 성격 및 상품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격,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4.15조

특송화물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³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의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다음에 의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특송화물과 관련된 정보의 도착 전 처리를 규정하는 것

나.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하는 것

다. 특송화물의 반출에 요구되는 서류를 최소화하는 것

라.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가능한 경우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하는 것

마. 당사국이 신고서 및 부가서류 그리고 관세 및 조세의 납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중량 또는 가격의 선적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대우를 적용하고,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유형에 기초하여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만, 그 대우는 서류와 같은 저가의 상품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바. 특정 규정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 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를 규정하는 것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수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위험관리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상품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

³ 당사국이 이 조에서 대우를 규정하는 기준 절차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당사국이 별도의 신속화된 반출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가적인 정보의 제출 및 비자동 허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4.16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근거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선별된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그 선별된 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와 그 선별된 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4.17조 반출 시간 연구

1. 양 당사국은 그들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평가하고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고려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가 발행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 측정 지침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관세 당국에 의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권장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용된 방법과 식별된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1항에 언급된 반출 시간 연구에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4.18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음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9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행정 결정⁴을 내리는 모든 인이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보다 높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행정 당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그에 의한 재심사, 그리고

⁴ 이 조의 “행정 결정” 이란 개별 사례에서 특정한 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말한다. 이 조의 행정 결정은 1994년도 GATT 제10 조의 의미에서의 행정 행위 또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법적 체계에 규정된 대로 행정 행위나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관세 당국이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지시하기 위한 대안적 행정 메커니즘이나 사법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2. 당사국의 법률은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가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전에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추가 불복청구, 그들에 의한 추가 재심사 또는 사법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⁵

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정해진 기간 내, 또는

나. 과도한 지체 없이

5.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인에게 행정 결정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도록 보장하여 그러한 인이 필요한 경우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제1항에 언급된 행정 결정 또는 누락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이 관세 당국 외에 관련 국경 기관이 내린 행정 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 권장된다.

8.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이유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⁵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행정부작위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4.20조

관세 협력

1.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마.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행정적 변경, 법이나 규정의 수정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과 관련된 유사한 조치에 대한 시의적절한 통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 통지는 영어나 그 당사국의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4.21조에 적시된 연락처에 제공될 것이다.

3. 한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제4.21조

협의 및 연락처

1.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관세 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을 제공하면서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연락처를 통하여 수행되고,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개시된다.
2. 그러한 협의가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안을 상품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한다.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되고 해당 정보의 모든 변경은 신속하게 통보된다.